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3472 제출연월일: 2024. 9. 2. 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전통주의 세율을 반출 수량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전통주로서 탁주, 약주 등의 주류 중 일정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을 종전 에는 각 주류의 종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 주류의 종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「국회법」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

법률 제 호

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 중 "100분의 50으로 한다"를 "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전통주의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주류 제조장에 서 반출한 전통주의 세율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 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세율) ①・② (생 략)	제8조(세율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
③ 전통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	③
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	
하는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	
한 세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	
따른 세율의 <u>100분의 50으로 한</u>	<u>100</u> 분의 50의 범위
<u>다</u> .	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
	따라 경감할 수 있다.

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의 결과

O 수입 : 5년간 총 △40억원

(단위: 억원)

구 분	연 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 계	연평균
	0							
지출	0							
	소 계(A)							
	ㅇ 소규모 전통주							
수입	제조자에 대한 주세율	△8	△8	△8	△8	Δ8	△40	△8
Тн	경감기준 조정 (§8)							
	소 계(B)	△8	△8	△8	Δ8	Δ8	△40	△8
총비	용(A-B)	8	8	8	8	8	40	8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		주세 경감을 적용받는 전통주의 반출 수량을 확대하되, 현행대비 확대분에
1	제8조제3항(세율)	대해서는 각 주종별 세율의 100분의 30을 경감하기 위해 주세 경감율을 100
		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제8조제3항(세율)	여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○ 경감한도를 초과하여 감면받지 못한 세액만큼 '25년 이후에 추가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세수효과 추산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소규모 전통주 제조자에 대한 주세율 경감기준 조정 (§8③)
 - '23년 신고실적을 바탕으로 현 법령 상 감경한도 초과 생산분에 경감세율을 적용하여 추계

IV. 부대의견

O 없음			

V. 작성자

O 성명

사무관	과장	국장
최관수	김정주	이용주

O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관수	044-215-4333	choiks0229@korea.kr

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원조달방안

I. 항목별 재원조달방안

O 해당없음(세법 개정은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)

〈항목별 재원조달방안〉

(단위: 백만원)

연 도 구 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 계
○ 조세수입·세외수입 또는 국채발행·차입						
○ 회계·기금 간 전입						
○기존 예산·기금의 항목 간 조정						
○기타						
〈합 계〉		해	당	없	음	

Ⅱ. 부문별 재원조달방안

O 해당없음(세법 개정은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)

〈부문별 재원조달방안〉

(단위: 백만원)

연 도 구 분	2024	2025	2026	2027	2028	합 계
□ 중앙정부						
ㅇ 일반회계						
□ 지방자치단체						
□ 기타						
〈합 계〉		해	당	없	이미	

Ⅲ.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

1. 중앙정부의 항목별 재원조달 방안

○ '25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비과세·감면 효율화, 과세기반 확대 노력 등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해 나갈 예정

2. 지방자치단체의 항목별 재원조달 방안

O 해당없음

3. 기타 재원조달 방안

O 해당없음

Ⅳ. 부대의견

O 해당없음

V. 협의사항

협의시점	협의기관	주요 협의내용 및 협의결과

Ⅵ. 작성자

O 성명

사무관	과장	국장
최관수	김정주	이용주

O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관수	044-215-4333	choiks0229@korea.kr

^{*} 주된 작성자의 연락처를 기재